

IDIP 정책이슈리포트 2026-01

#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26. 3

## 요약

- ▶ 조사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 ▶ 표본: 성인 남녀 518명 | 조사일: 2025.12.14.~17. |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 조사 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차등적 책무 부과, 사전 영향 검토, 사후 모니터링, SNS 이용 제한,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등)에 대한 평가

### ① 전체 국민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하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핵심 규제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의 전국민 인지도는 45.0%이며, 심층인지는 6.2%에 불과함
-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의 평균 인지도가 51.4%로 자녀 없는 응답자(42.4%)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chi^2=23.20$ ,  $p<.001$ ), 특히 고등학생 자녀 부모 인지도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②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에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익명의 이용자와도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개인방송(68.9%) > 메신저/SNS(66.8%) > 랜덤채팅 앱(58.1%) 순으로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③ SNS 전면 이용 제한보다 기능 제한 방식의 규제 수용도가 더 높음

-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67.5%이 찬성하고 있으며,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성률(78.8%)이 이보다 11.3%p 높게 나타남
- 실효성 평가에서도 프로필 비공개·DM 제한(79.7%)이 SNS 전면 이용제한(71.0%)을 상회

### ④ SNS 이용 제한 적정 연령: 만 16세 미만이 최다 선택(38.8%)

- 호주 온라인안전법 등 국제적인 규제 기준과 유사한 연령대를 선택함
- SNS 이용 제한의 적정 연령에 대해 만 16세 미만(38.8%), 만 19세 미만(22.6%), 만 13세 미만(20.7%), 만 14세 미만(17.0%) 순으로 응답함

# 목차

---

<b>조사 개요</b>	<b>3</b>
<b>제1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 및 정책 인식</b>	<b>4</b>
1.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인지도	4
1.2 아동·청소년보호 우선 서비스	5
1.3 차등적 책무 부과	6
1.4 사전 영향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6
<b>제2장 SNS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대안 비교</b>	<b>8</b>
2.1 SNS 전면 이용 제한	8
2.2 SNS 전면 이용 제한 적정 연령	8
2.3 프로필 비공개 및 DM 제한	9
2.4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SNS 규제 태도 비교	10
2.5 제도 인지 수준에 따른 규제 태도 차이	11
<b>제3장 결론 및 시사점</b>	<b>12</b>
3.1 주요 발견 종합	12
3.2 정책 시사점	12
<b>부록: 설문 문항</b>	<b>14</b>

## 조사 개요

### 서론

-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다변화로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프로필기반 소셜미디어, 개인 메신저 등으로 점차 다양화 되고있음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로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 이에,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음
  - 호주는 온라인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유해콘텐츠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함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에게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제정함
  -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 우리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 본 조사는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수립과정에 국민의 법감정과 수용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함

### 조사 설계

조사명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기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조사일시	2025년 12월 14일 ~ 12월 17일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규모	최종 분석 대상 n=518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4.3%p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패널: 오픈서베이)

# 제1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 및 정책 인식

## 1.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인지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의미함

- 지정 대상자: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부서의 장
- 책임자 역할: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피해 구제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처리

▶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에 대한 전체 평균 인지율은 45.0%임**

-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 285명)이 제도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하였으며, 내용을 자세히 아는 심층 인지 응답자는 6.2%(32명)에 불과함

인지 수준	비율	n
미인지(처음 들어본다)	55.0%	285명
단순인지(존재는 알지만 내용 모름)	38.8%	201명
심층인지(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6.2%	32명
인지율 합산(단순+심층)	45.0%	233명

▶ **자녀 유무 및 자녀 연령대에 따른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인지율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chi^2=23.20$ ,  $df=2$ ,  $p<.001$ )**

구분	n	미인지	단순인지	심층인지	인지율 합산
자녀 없음	370	57.6%	39.5%	3.0%	42.4%
자녀 있음(소계)	148	48.6%	37.2%	14.2%	51.4%
↳ 영유아(만0-6세)	23	65.2%	17.4%	17.4%	34.8%
↳ 초등학생(만7-12세)	40	57.5%	25.0%	17.5%	42.5%
↳ 중학생(만13-15세)	29	51.7%	41.4%	6.9%	48.3%
↳ 고등학생(만16-18세)	56	33.9%	51.8%	14.3%	66.1%

\*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고등학생 자녀 부모(n=56)의 인지율 66.1%: 자녀가 SNS·온라인커뮤니티를 활발히 이용하는 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모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중학생 자녀 부모(n=29): 단순 인지율 41.4%로 전 집단 중 최고치를 보이며, 스마트폰 본격 이용 개시 시기에 부모 관심이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영유아 자녀 부모(n=23): 아동의 독립적 디지털 노출이 제한적인 연령이나 제도 인지율은 34.8%로, 영유아 타겟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예방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  $\chi^2=28.58$ ,  $df=4$ ,  $p<.001$ 로 자녀 연령대 5그룹 간 제도 인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1.2 아동·청소년보호 우선 서비스

- ☞ 청소년보호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개인방송, 메신저/SNS, 랜덤채팅 앱 순으로 응답함(1~5 순위 선택)
- ☞ 상위 3개 서비스는 익명의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임
  - 콘텐츠 소비(OTT, 웹소설·웹툰, 포털) 중심의 서비스보다 상호작용 기반 플랫폼에서 청소년보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순위	서비스 유형	인급률	1순위율	가중점수
1	인터넷개인방송(유튜브, 쇼 등)	68.9%	24.1%	1,339
2	메신저/SNS(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톡 등)	66.8%	21.2%	1,246
3	랜덤채팅 앱	58.1%	19.7%	1,060
4	커뮤니티(온라인 게시판, 카페 등)	46.5%	8.1%	738
5	웹소설·웹툰/음악스트리밍/거래 플랫폼 등	42.1%	6.4%	634
6	OTT/VoD(넷플릭스, 웨이브 등)	30.5%	6.4%	466
7	포털(검색, 뉴스 등)	20.8%	4.8%	331
8	웹하드	21.0%	3.5%	315
9	온라인쇼핑몰	11.0%	3.3%	190
10	앱스토어	8.3%	2.5%	138

- ☞ 또한, 연령 확인 조치를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접속이 기술적으로 차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77.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chi^2=11.91$ ,  $df=4$ ,  $p=.018$ )
  - 이는 기술적 접근 차단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제도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됨을 의미함

### 1.3 차등적 책무 부과

- ▶ 플랫폼 규모·서비스 유형·청소년 이용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찬성함

항목	찬성	보통	반대
차등적 책무 부과 찬반	78.4%	18.9%	2.7%

- ▶ 차등 기준으로 적합한 지표(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자 비율(59.1%)이 가장 많이 선택됨
  - 이용자 수(19.1%), 매출액(17.6%) 등 서비스 전체 규모보다 청소년 이용자 비율(59.1%), 과거 청소년 관련 위반 이력(21.8%), 서비스 유형(21.0%) 등 아동·청소년 노출 위험도에 연계된 기준을 적절하게 평가함

차등 기준(복수응답)	전체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청소년 이용자 비율	59.1%	59.5%	58.1%
과거 청소년 관련 위반 이력	21.8%	21.4%	23.0%
서비스 유형(프로필·연락수단 제공 등)	21.0%	22.4%	17.6%
이용자 수 규모	19.1%	17.3%	23.6%
매출액 규모	17.6%	17.8%	16.9%

### 1.4 사전 영향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 ▶ 신규 기능 출시 전 아동·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 영향 검토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64.3%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 사전 영향 검토 의무의 적용 대상 범위로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48.3%)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19.4%), 현행 지정의무대상자 수준(16.2%)이 뒤를 이음

적용 대상 범위	응답 비율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48.3%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만	19.4%
현행 지정의무대상자(10만명/10억원) 수준	16.2%
대규모 사업자만	8.7%
불필요	4.4%
모름	3.1%

- ▶ 검토 대상 기능의 범위로는 모든 신규 기능(35.0%)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프로필 노출·메시지 전달 가능 기능(25.7%), 청소년 타겟팅 기능(16.9%), 멀티미디어 기능(14.6%) 순으로 나타남( $\chi^2=37.38$ ,  $df=10$ ,  $p<.001$ )

- ☞ 실효성을 긍정하는 집단에서 더 넓은 범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선택하여, 제도의 효과를 신뢰할수록 규제 범위를 넓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확인됨
  - 실효성을 긍정하는 집단(n=423)은 모든 신규 기능을 가장 많이 선택(37.6%)한 반면, 실효성에 부정적인 집단(n=19)은 15.8%에 그쳐 두 집단 간 인식 격차(21.8%p)가 나타남. 제도를 신뢰할수록 적용 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는 청소년 프로필·메시지 전달 기능(31.6%)처럼 잠재적 위험이 높은 기능에 한정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함

적용 대상 범위	전체	실효성 긍정(n=423)	실효성 부정(n=19)
모든 신규 기능	35.0%	37.6%	15.8%
청소년 프로필 노출·메시지 전달 기능	25.7%	23.9%	31.6%
청소년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기능	16.9%	17.3%	10.5%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기능	14.6%	14.9%	21.1%
서비스 내 주요 기능 전반	6.1%	5.7%	15.8%
모름/기타	1.7%	0.7%	5.3%

- ☞ 집단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청소년 자녀 보호자가 있는 경우 사전영향검토 제도에 대해 약 3.3배 높은 지지(OR=3.25, p<.001)를 보이고 있어, 실제 자녀가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된 체감 위험이 제도 수요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전체	긍정(%)	보통(%)	부정(%)
전체	518	80.7	16.0	3.3
자녀 없음	370	76.5	19.2	4.3
자녀 있음	148	91.2	8.1	0.7

- ☞ 청소년보호업무의 이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2%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규제 방안 중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함
  - 사후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제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남 (x<sup>2</sup>=6.41, df=8, p=.602)

## 제2장 SNS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대안 비교

### 2.1 SNS 전면 이용 제한

- 특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7.5%가 찬성함

항목	찬성	보통	반대
특정 연령 이하의 SNS 전면 이용 제한	67.5%	19.9%	12.6%

- SNS 플랫폼의 전면 이용 제한에 대해 71.0%가 효과적일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10.8%임

### 2.2 SNS 전면 이용 제한 적정 연령

- SNS 전면 이용 제한의 적정 연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내 형법 상 ‘아동’ 연령 기준인 만 16세 미만을 가장 적절한 연령으로 선택됨(38.8%)
- 한편, 전면적인 이용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연령기준을 가장 적절한 연령으로 선택함(42.9%)

연령 기준	선택 비중	해당 학령	용어	관련 기준
만 13세 미만	20.7% (107명)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만 14세 미만	17.0% (88명)	중학교 1학년 이하	아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만 16세 미만	38.8% (201명)	중학교 3학년 이하	아동	형법 제274조
만 19세 미만	22.6% (117명)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내에서 이용량이 높은 SNS 플랫폼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조치가 필요한 서비스는 인스타그램(40.3%)과 틱톡(39.7%), X(트위터)(9.5%), 페이스북(5.3%), 카카오톡(5.1%) 순으로 응답함

서비스	응답 비율	특성
인스타그램	40.3%	사진·영상 중심 SNS, 10대 이용률 높음
틱톡	39.7%	숏폼 영상 SNS, 10대 이용률 최상위
X(트위터)	9.5%	텍스트·링크·이미지 중심 SNS
페이스북	5.3%	30대 이상 중심, 10대 이용률 낮음
카카오톡	5.1%	메신저 기반, 전 연령 이용

### 2.3 프로필 비공개 및 DM 제한

- 청소년의 프로필 비공개 및 DM 발송 제한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78.8%가 찬성하여, SNS 전면 이용 제한(67.5%)보다 긍정률이 약 11.3%p 높음
- 두 조치 간 찬성률 및 실효성 인식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됨
  - 프로필 비공개·DM 제한의 찬성률(78.8%)은 SNS 전면 이용 제한(67.5%)보다 11.3%p 높으며 ( $p < .001$ ), 실효성 인식(79.7%)도 SNS 전면 이용 제한(71.0%)보다 8.7%p 높음( $p < .001$ )

항목	긍정/찬성	보통	반대/부정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조치	78.8%	16.4%	4.8%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실효성	79.7%	14.1%	6.2%

- 이 결과는 서비스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전면 이용 제한보다,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기능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 수용도가 더 높음을 의미함
  - 실효성 평가에서도 프로필 비공개·DM 제한(79.7%)이 전면 이용 제한(71.0%)보다 높게 나타남.

항목	긍정/찬성	보통	부정/반대
SNS 전면 이용 제한 조치	67.5%	19.9%	12.6%
SNS 전면 이용 제한 실효성	71.0%	18.1%	10.8%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조치	78.8%	16.4%	4.8%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실효성	79.7%	14.1%	6.2%

## 2.4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SNS 규제 태도 비교

- ▶ 자녀 유무 및 중·고등학생 자녀 보유 여부를 관여도의 지표로 삼아, SNS 연령 제한과 프로필 비공개·DM 연령 제한에 대한 찬성률 및 실효성 긍정률을 비교하였음
- ▶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가 있는 응답자(n=148)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n=370)보다 SNS 연령 제한 찬성률(75.7% vs 64.3%)과 실효성 긍정률(77.7% vs 68.4%)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
  - 두 항목 모두 카이제곱 검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됨(찬성: p=.017, 실효성: p=.045)
  - 반면 프로필 비공개·DM 제한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전 집단의 찬성률이 78~84%로 매우 높게 형성된 결과임

구분	전체	자녀 있음(A)	자녀 없음(B)	차이(A-B)
SNS 연령제한 찬성	67.5%	75.7%	64.3%	+11.5%p*
SNS 연령 제한 실효성 긍정	71.0%	77.7%	68.4%	+9.3%p*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성	78.8%	79.7%	78.4%	+1.3%p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실효성 긍정	79.7%	83.8%	78.1%	+5.7%p

- ▶ 중·고등 자녀를 보유한 응답자(n=85)는 그 외 집단(n=433)에 비해 SNS 이용 연령 제한 찬성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80.0% vs 65.1%, p=.011), 실효성 긍정률 역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82.4% vs 68.8%, p=.017)
  - 자녀가 있더라도 영유아·초등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없음 집단과의 찬성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단순히 자녀 유무만으로는 SNS 연령제한 찬성이 높아지지 않음
  - 자녀가 실제 SNS 이용 연령대(중·고등)에 진입한 부모일수록 규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해석됨
  - 프로필 비공개·DM 제한은 세 집단 간 어떤 쌍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p=.303, p=.163), 전 집단에서 찬성률이 이미 75~86%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집단 특성과 무관한 정책 수단으로 확인됨

구분	전체	중고등 자녀 있음 (n=85)	중고등 자녀 없음 (n=433)	차이
SNS 연령제한 찬성	67.5%	80.0%	65.1%	+14.9%p
SNS 연령 제한 실효성 긍정	71.0%	82.4%	68.8%	+13.6%p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성	78.8%	83.5%	77.8%	+5.7%p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실효성 긍정	79.7%	85.9%	78.5%	+7.4%p

## 2.5 제도 인지 수준에 따른 규제 태도 차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의 인지 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수록 SNS 전면 이용제한보다는 제한적인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집단(n=32)의 SNS 전면 이용 제한 찬성률(53.1%)은 미인지(69.5%) 및 단순인지(71.9%) 집단보다 낮고, 반대율(21.9%)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아동·청소년보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응답자일수록 전면적 규제보다 정밀하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반면, 프로필·DM 제한 찬성에 대해 심층인지 집단(75.0%)과 다른 집단(약 79%)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기능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 이해도에 무관하게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항목	미인지 (n=285)	단순인지 (n=201)	심층인지 (n=32)
SNS 전면 이용 제한 찬성	69.5%	71.9%	<b>53.1%</b>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성	79.6%	79.1%	75.0%

\*  $\chi^2=8.24$ ,  $df=4$ ,  $p=.083$ ; 다만, 심층인지 집단 표본(n=32) 소규모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3.1 주요 발견 종합

- ▶ 일반 국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45.0%), 자녀 보육으로 관여도가 높아지면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
- ▶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거나 임박하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확인됨. 고등학생 자녀 부모의 경우 제도 인지율(66.1%)이 영유아 자녀 부모(34.8%) 대비 약 2배에 달함
- ▶ 인터넷개인방송·메신저/SNS·랜덤채팅 앱 등 쌍방향 소통 기반 플랫폼을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확인됨.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대상자 지정 기준은 전체 서비스의 규모(매출액, 이용자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응답자는 서비스 유형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평가함
- ▶ SNS에서의 청소년 보호조치방안에 대한 국민의 긍정응답률은 매우 높았음. 그러나 특정 연령 이상에서 SNS 이용을 전면 이용 제한하는 조치(67.5%)보다는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조치(78.8%)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게 나타남
- ▶ 자녀가 실제 독립적으로 SNS를 이용하거나 이용이 임박할수록 SNS 이용 연령 제한에 대해 찬성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자녀 유무, 자녀의 학령에 상관없이 SNS 전면적인 이용제한의 연령으로는 '16세 미만'을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함
- ▶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집단은 SNS 전면 이용 제한에 대해 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규제 수요가 단순한 당위론적 요구만이 아니라 실효성 판단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함

### 3.2 정책 시사점

- ① 차등 책무 부과: 서비스 특성·위험 수준 기반 설계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규모 중심의 간접적 기준보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차등적 책무 부과 방식에 대한 국민 지지(찬성 77.8%)가 확인됨
  - 현행 규모 중심 기준에서 나아가 청소년 이용자 비율, 쌍방향 소통 가능성,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한 차등 책무 체계 설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응답자들이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를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불특정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아동·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② 사전영향검토와 사후 모니터링: 전주기 관리체계에 대한 수요

- 신규 기능·서비스 출시 시 청소년 보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영향검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0.7%로 높게 나타남. 특히 청소년 자녀 보호자는 '자녀없음' 집단 대비 약 3.3배 (OR=3.25,  $p<.001$ ) 높은 지지를 보여, 자녀가 실제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과 연동된 체감 위험이 제도 수요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규제 방안 중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함.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지가 제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임. 이는 사후 모니터링이 단순한 행정적 점검을 넘어, 청소년 보호 규제 체계 전반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③ SNS 규제: 전면 제한보다 기능 제한 방식 우선 검토

- SNS 과몰입, SNS를 통한 잠재적 위험 노출 등에 대한 우려 증가로 특정 연령 이하에 대한 SNS 이용 제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
- 그러나, 프로필 비공개 설정·친구 외 DM 제한 조치가 전면적인 이용 제한보다 필요성(78.8%)과 실효성(79.7%)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주목할 점은 기능 제한 방식이 찬성률뿐 아니라 실효성 평가에서도 전면 이용 제한을 상회한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전면적인 이용 제한 보다 서비스 내 잠재적 위험 기능을 선별적·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최소침해적 보호조치'가 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④ SNS 이용제한 연령 수준: 만 16세 미만이 적절

- SNS 이용제한 적용 시 적정 연령으로 만 16세 미만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자녀유무 및 자녀의 학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로 나타남. 아동의 조절능력 발달 수준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인 만 19세 미만보다 저연령인 '아동'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청소년 보호의 방향은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수단으로 개입하는 정밀한 규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설계가 당위론적 규제 확대가 아닌, 실효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정교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함

## 부록: 설문 문항

### 설문 문항 구성

문항	유형	내용	응답 척도/보기
Q1	단일선택	연령대	만20-29세/30-39세/40-49세/50-59세/ 60세 이상
Q2	단일선택	성별	여성/남성
Q3	다중선택	미성년 자녀 유무·연령대	없다/영유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Q4	단일선택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인지도	심층인지/단순인지/미인지
Q5	5점 척도	차등적 책무 부과 찬반	매우 찬성~매우 반대
Q6	다중선택	차등적 책무 부과 기준	이용자 수/매출액/청소년 비율/서비스 유형/ 위반 이력
Q7	5순위	청소년보호 우선 서비스	10개 서비스 중 5순위까지 선택
Q8	5점 척도	19세 미만 접속차단 서비스 책임자 지정 필요성	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Q9	5점 척도	사전영향검토 실효성	매우 효과적~전혀 비효과적
Q10	단일선택	사전영향검토 적용 사업자 범위	모든/현행/대규모만/청소년비율높은/불필요/모름
Q11	단일선택	사전영향검토 대상 기능 범위	모든신규/청소년타겟/멀티미디어/프로필메시지/ 주요기능/모름
Q12	5점 척도	사후 모니터링 필요성	매우 필요~전혀 불필요
Q13	5점 척도	SNS 전면 이용 제한 찬반	매우 찬성~매우 반대
Q14	단일선택	SNS 이용 제한 적정 연령	13세/14세/16세/19세 미만, 기타
Q15	단일선택	SNS 제한 적용 서비스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X-트위터/카카오톡
Q16	5점 척도	SNS 전면 이용 제한 실효성	매우 효과적~전혀 비효과적
Q17	5점 척도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반	매우 찬성~매우 반대
Q18	5점 척도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실효성	매우 효과적~전혀 비효과적

**IDIP 정책이슈리포트 2026-01**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발행처**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https://idip.co.kr/>

**발행일**

2026. 3. 24.

**작성자**

윤금남(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장)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신혜인(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복제는 금합니다.

© 2026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